

1.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2,251,003	18,967,530
일반회계	585,894,363	17,576,831
특별회계	46,356,640	1,390,699
기타특별회계	46,356,640	1,390,699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238,302	127,149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057,000	121,710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10,900	6,3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78,000	17,34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851,126	235,534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47,147	25,4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1,005	19,5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120,293	123,609
수질개선특별회계	18,499,402	554,982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5,303,465	159,104

제 2 조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0,517,863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24,670,663천원을 포함한다.

제 6 조 202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